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사건의 이첩기관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고, 재이첩 조항을 삭제함(안 제7조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사건의 이첩 · 송치 대상 기관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군사법원법」이 개정(법률 제19744호, 2023. 10. 24. 공포, 2023. 10. 24. 시행)됨에 따라, 해양경찰청이 경찰청 등 다른 이첩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재이첩받는 것이 아니라 군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.

※ 근거법령 :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

제228조(군검사, 군사법경찰관의 수사)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.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군수사기관이 사건을 이첩하고, 관계서류 등을 송부해야 하는 기관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고, 해양 관련 사건을 해양경찰청이 재이첩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지 아니한 사건의 이첩 기관을 명확히 하여 실무상 혼란 해소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